

「구미시 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 
조례안」

# 심 사 보 고 서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: 2026년 1월 5일

나. 제출자: 구미시장

다. 회부일자: 2026년 1월 6일

라. 상정일자: 2026년 1월 14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

2026년 1월 16일

제2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## 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사회복지국장 황 은 채

### 나. 제안이유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3조)
- 지역계획 수립·시행, 통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개인별지원계획 수립, 통합지원 제공·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8조)
-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에 관한 사항(안 제9조, 제10조)
- 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~제13조)
-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- 개인정보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15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정책기획과, 예산재정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### 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박 영 훈

#### ○ 본 조례안은

- 「의료·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노쇠, 장애, 질병,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,

#### ○ 검토 결과,

- 중증 돌봄 대상자도 시설 입소에만 의존하지 않고, 살던 곳에서 의료·요양·돌봄을 통합 지원받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,
- 대상자 개인별 필요에 맞춘 서비스 연계·조정이 가능해져 돌봄 공백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, 불필요한 시설입소를 줄임으로써 가족의 부담 경감과 지역 돌봄체계의 효율성·지속가능성 제고, 사회적 비용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.
- 제5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위탁 대상과 위탁 범위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, 전문기관 위탁이 필요한 사업과 일반 수행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사업을 구별함으로써 행정 효율성과 책임성을 함께 확보할 필요가 있음.

- 아울러, 집행기관에서는 통합돌봄 제도가 기존 복지·보건·요양 서비스와 형식적으로 병렬 운영되지 않도록, 부서 간 역할 분담과 협업 체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조정 기능이 작동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, 특히 전담조직 및 통합지원 창구 설치 이후, 대상자 발굴·판정·연계 과정에서 행정 절차가 오히려 복잡해지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운영 매뉴얼을 조기에 정비해야 할 것임.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#### 5. 토론요지:

- 사업 개시 전 인력 확충 및 사전 교육(직무·시스템)을 통해 운영 효율을 높이고,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.
- 사업 지연 및 인력 미비 등 잠재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,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 동력을 확보할 것.

#### 6. 소수의견의 요지: 생략

#### 7. 심사결과: 수정가결